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국고채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채권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09.07.28- 2010.06.10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KTB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09.09.03	제 41 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 1. 지급기준일: 국고채권 이자지급 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(이자지급 기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이자지급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이	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 1. 지급기준일: 국고채권 이자지급일로부터 제 3 영업일(이자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이자지급일의 직전 영업일이 이자지급일이 되며,

2009. 12. 14

		<p>이자지급 기준일이 되며, 이자지급 기준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자지급 기준일의 다음 영업 일이 이자지급 기준일이 됨) 2. ~ 4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</p>	<p>이자지급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이 이자지급일이 됨)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	제20조(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)	<p>① ~ ④ 생 략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4조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다. 1. 생 략 2.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·환매요청 접수의 제 한에 대한 공고 업무 3. ~ 6. 생 략</p>	<p>① ~ ④ 생 략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4조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다. 1. 생 략 2.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·환매요청 접수의 제 한에 대한 공고 업무 3. ~ 6. 생 략</p>
	제34조(투자 대상등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 한다. 1. ~ 3. 생 략 4. 법 제246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신 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생 략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 한다. 1. ~ 3. 생 략 4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생 략</p>
	제38조(투자 신탁보수)	<p>① ~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채산의 평균 잔액(매일의 투자 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 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 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보 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 다. 1. 운용보수율: 연 1,000분의 1.05 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 3. 신탁보수율: 연</p>	<p>① ~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채산의 평균 잔액(매일의 투자 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 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 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보 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 다. 1. 운용보수율: 연 1,000분의 0.75 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5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</p>

		1,000분의 0.1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 ⑤ 생략	0.1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 ⑤ 생략
--	--	--	--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계약	220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
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 사항 없음
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운용회사인 삼성자산운용(주)의 홈페이지(<http://www.samsungfund.com>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